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김상훈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433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0월 31일  
발 의 자 : 김상훈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최관술 · 서영진 · 김인호 · 김제리  
신원철 · 박진형 · 황준환 · 장우윤  
유찬중 · 성중기 의원(10명)

1. 제안 이유

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의 금지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, 고장 및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요금 과다 청구,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가 주로 적발이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놓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상위법령 개정안을 반영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가.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.(안 제3조제4호, 5호 신설)

나. 신고포상금 대상 확대(별표 1 제3호 신설)

3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
- 「자동차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: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
5.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: 법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수종사자

제10조 후단 중 “형사처벌”을 “형사처분”으로 한다.

별표 1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 행위	포상금	비고
1.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(제3조제1호)	100,000	
2.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(제3조제2호 및 제3호)	150,000	
3. <b>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행위</b> (제3조제4호 및 제5호)	200,000	
4.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(제3조제6호 및 제7호)	150,000	
5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(제3조제8호)	200,000	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